

유언의 효력은 오행일뿐이다

공고

공고번호	432.4	기안용지		제정규격 5호
제정번호		(제정번호 465)		국장전결사항
제정기관		기안과 김 동 칸	결재자	도시계획국장
시행일자	1967. 6. 23	기안과 서 명	결재	
보존년한		기안 67. 6. 15	제정일자	6/16
보	구획정의 주장	[공고제 85호]		
조	권지계장			
기				
관				
협	계획계장	법무담당	법무담당	
조	공부계장	문서계장	공부계장	
유		공	판	장
심	각 함 참조	김 열	6. 23	6월 23일
조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6월 23일
제	권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공고제 85호]		
제 1 안	내부결재			
<p>1. 수유 토지구획정리 제 2 차 권지 예정지를 서울특별시 공표 제 857호 (65. 8. 13)로 지정 공고함바 있으나 동 지구 제 119 부락내 사무 착오로 인한 부족 권지 사실이 (별첨 복명서 참조) 발견 되었가 아래에 의하여 일부 권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p> <p>가. 종전 토지 (미아동 215- 2, 220- 1, 225- 2 담) 1,552 평에 대하여 1,414.60 평의 권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할것이나 면적 계산 착오로 100평이 부족한 1,314.60 평을 지정하였음.</p> <p>나. 부족 면적 100평은 동 지구 70 부락내 제비지 215평을</p>				

5-1 [의견] 요구는 정도 이하의 것도 정도 이상 시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을 추가 지정함.

제 2 안

공
고

서울특별시 **공구채 8(호)**

권지 예정지 일부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로지구획 정리 지구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권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지 예정지를 변경하고 관계
조서 및 도면을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람에 공할함

1967. 6. 23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동대문구 용두동 119의 33 이 정선 받심 시 장

제목 권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로지구획정리 지구내 귀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권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지정서와 같이 권
지 예정지중 일부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

- 첨부. 1. 공고문 사본 1부.
- 2. 권지 예정지 변경 조서 1부.

제 4 안

수신 성북구청장 받심 시 장

제목 권지 예정지 일부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수유로지구획정리 지구내 일부 지역에



1967

570

공고제

공고

고

대한 논지 예정지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변경 지정 ^{관청} ~~하고~~ 관계 조서 등 송부
하오니 관계인의 종람에 공할것이며 사무 처리상 착오 없기 바람.

- 첨부. 1. 논지 예정지 변경 지정서 1부.
- 2. 논지 예정지 지정도 1부.
- 3. 공고문 사본 1부.

제 5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국장

제목 논지 예정지 변경 지정 공고

수유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 지역에 대한 논지 예정지를 별
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변경 지정 하였으니 시보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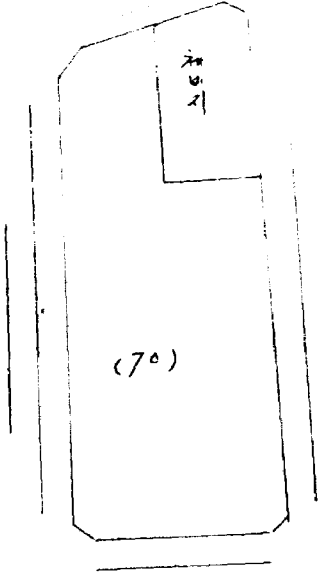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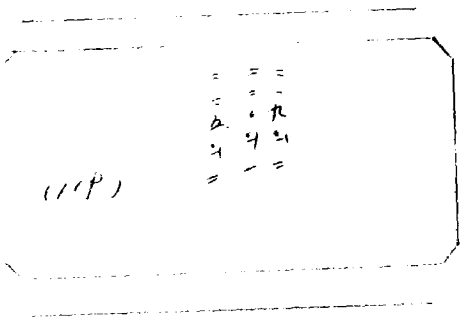
첨부. 공고문 사본 . 7달.

관지예정지번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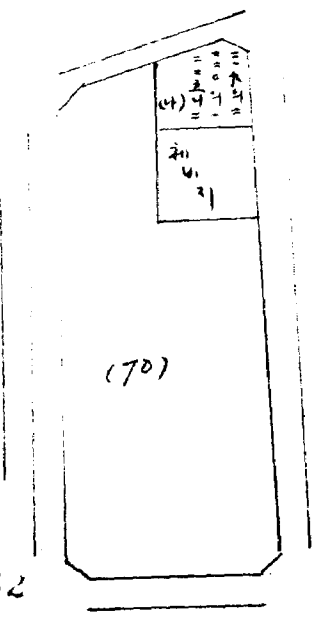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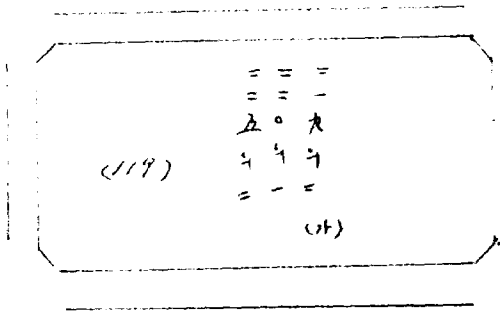
총권 오지				관지예정지			
동	명	지번	지류면적	번호	면적	면적	비고
미	아	219	합 653-			29	
3		220	3 229-	119	100.60	119	100.60
3		221	3 970-			20	100.50
		222					100.50
		223					100.50
		224					100.50
		225					100.50
		226					100.50
		227					100.50
		228					100.50
		229					100.50
		230					100.50
		231					100.50
		232					100.50
		233					100.50
		234					100.50
		235					100.50
		236					100.50
		237					100.50
		238					100.50
		239					100.50
		240					100.50
		241					100.50
		242					100.50
		243					100.50
		244					100.50
		245					100.50
		246					100.50
		247					100.50
		248					100.50
		249					100.50
		250					100.50
		251					100.50
		252					100.50
		253					100.50
		254					100.50
		255					100.50
		256					100.50
		257					100.50
		258					100.50
		259					100.50
		260					100.50
		261					100.50
		262					100.50
		263					100.50
		264					100.50
		265					100.50
		266					100.50
		267					100.50
		268					100.50
		269					100.50
		270					100.50
		271					100.50
		272					100.50
		273					100.50
		274					100.50
		275					100.50
		276					100.50
		277					100.50
		278					100.50
		279					100.50
		280					100.50
		281					100.50
		282					100.50
		283					100.50
		284					100.50
		285					100.50
		286					100.50
		287					100.50
		288					100.50
		289					100.50
		290					100.50
		291					100.50
		292					100.50
		293					100.50
		294					100.50
		295					100.50
		296					100.50
		297					100.50
		298					100.50
		299					100.50
		300					100.50

$$S = \frac{1}{12500}$$

한 일 권



한 일 후



5-5⁵²